

11.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0년 8월 28일
- 발 의 자 : 김성태 의원, 김대현 의원, 김태원 의원, 김혜정 의원,  
배지숙 의원, 이시복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9월 2일
- 상정일자 :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0년 9월 10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성태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‘주거공간 지원’ 내용을 신설함.(안 제6조제4호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위안부할머니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우리시에서는 2018년 12월 「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현재 전국 위안부할머니 중 생존해 계신 분은 전국에 열여섯 분으로 우리시에는 한 분이 계시고, 현재 여성가족부 생활안정자금 월 147만원을 비롯한 의료지원비 외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, 설·추석 위문금 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.
- 현재 건축된 지 30여년 가까이 되는 12평형 규모의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,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 따라 주거공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,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안부할머니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향후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위안부할머니의 주 생활공간을 감안하여 시내 인근지역의 주택을 임대하여 제공할 예정이 되겠으나, 생활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안부할머니가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,
- 관할되는 구·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 의  | 답 변  |
|--|--|
| <p>위안부할머니의 거주지 지원을 위해 주소 이전이 될 경우, 현재 주소의 구·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 이전하는 구·군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, 어떻게 생각하는지?</p> | <p>거주지 이전이 예상되는 구·군과 협의 중에 있음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위안부할머니의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고려하면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는 데, 어떻게 생각하는지?</p>   | <p>주택과 아파트 모두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며, 위안부할머니의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판단해서 거주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.</p> |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